

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24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조례제정의 목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자구 수정.

주요골자

- 제1조(목적)의 문구 수정보완

첨 부

- 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대비표 1부

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사용료에”를 “사용료 징수에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전자 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사용료 징수에.....			